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

해당표준번호

SPS-KHFC 005-6336

해당표준명

스테인리스 상판 및 씽크볼

제정연월일

2016 년 2 월 4 일

개정연월일

년 월 일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1. 품질경영관리

심사사항	구비요건
1)사내표준화(社內標準化)· 품질경영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책임자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은 단체표준을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 수준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2)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경영을 총괄하는 품질경영부서(임직원 10인 이하 기업은 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안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자재 관리

심사사항 주요자재명	구비요건			
	검사항목	자재품질기준	검사방법	이행사항
(원자재) 1. 스테인레스 강판	1) 겉모양 2) 두께 3) 종류 4) 기계적 성질 또는 화학성분	자재의 품질기준은 생산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자재의 검사방법 및 항목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내표준에 의하여 자재를 인수할 때의 품질검사(이하 이표에서“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가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비고 1. KS표준 표시제품 또는 단체표준 표시품은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는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3. 위 자재는 생산되는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				

3. 공정·제조설비 관리

심사사항 주요 공정명	구 비 요 건			
	검사 또는 관리항목	검사 또는 공정관리방법	이 행 사 항	제조작업표준
1) 절 단	① 겉모양 ② 치수 (관리항목) ※ 날의 교환시기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 기법을 적 용하여 중간검 사 또는 공정관 리 방법을 규정 하고 있어야 한 다.	사 내 표 준 에 따라 검사 관 리를 실시하 여 그 기록 을 활용하고 공정관리자가 규정대로 실 시할 수 있어 야 한다.	각 공정에 대 하여 사용설 비, 작업방법, 작업 조건, 작 업상의 유의사 항 등을 규정 하고 이에 따 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2) 성 형 (절 곡)	① 겉모양 ② 치수 (관리항목) ※ 금형의 교환시기 및 설치위치			
3) 용 접	① 겉모양 (관리항목) ※ 용접조건			
4) 다 듬 질 (연 마)	① 겉모양 (관리항목) ※ 연마제종류, 교체시기			
비고 1. 테이블 위판이란 하부수납장 위에 일체형으로 설치/조립되는 상판을 말한다.				

주요 설비명	구 비 요 건
1. 절단설비 2. 프레스 3. 절곡기 4. 용접기 5. 연마설비 6. 집진설비	1. 당해 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보수·유회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2.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 1. 공정관리 단서규정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4. 제품 관리

심사사항 검사항목	구 비 요 건		
	제품의 품질기준	검사 방법	이행 사항
SPS - KHFC 005 - 6336의 검사항목	해당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은 단체표준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당제품의 검사 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개선 및 제품 품질향상에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검사자가 표준 및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비고 : 1. 중간검사와 겹치는 제품검사항목은 중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시험한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제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심사원은 제품 시험·검사자의 시험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5. 시험·검사설비 관리

주요 설비명	구비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수 측정기기 2. 화학 성분 3. 항복강도 시험기 4. 인장강도 시험기 5. 연신율 시험기 6. 경도 시험기 7. 내식성 시험기 8. 만수성 시험설비 9. 배수성 시험기 	<p>○. 해당 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도,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실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p> <p>○. 정밀도 및 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 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p>
<p>비고 : 1. 시험설비는 외부공인기관(KOLAS포함)과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외부공인기관(KOLAS포함)의 시험성적서로 관리하는 경우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에는 검사 Lot별로 반드시 외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2. 다만, 인수검사, 공정 및 제품의 검사에 필요한 측정 장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보유하여야 한다.</p>	

6. 소비자 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

심 사 사 항	구 비 요 건
1) 소비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례를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보상에 대해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2) 환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표준에 따른 제품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청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3) 자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업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생산·품질경영부서의 경영간부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업종과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품질관리 담당자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및 시험업무 관장

7. 제품 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번호	검사항목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n)	판정기준		비 고
				Ac	Re	
	SPS- KHFC 005-6336 의 검사항목	재고량	2 (대표적인 것)	0	1	

비 고 1. 로트는 공장별로 관리하고 있는 로트로 한다.
 2. 인증심사 시 시료채취는 재고량 중에서 임의 채취하고 n=2로 한다.
 3.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시 시료채취는 재고량 중 임의 채취하고 n=1로 한다.

8. 제품심사결과 결함의 분류

분야	표준번호	품목	검 사 항 목	경결함	중결함	치명 결함
일용품	SPS- KHFC 005 -6336	스테인리스 상판 및 씽크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모양 ○ 치 수 ○ 구조 및 가공 ○ 성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 성분 - 기계적 성질 . 항복 강도 . 인장 강도 . 연신율 . 경도 - 내식성 - 만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 밀폐 . 뚜껑 개봉 후 - 배수성 ○ 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 ○ ○ 	○

9. 단체표준 인증마크 표시방법

상품의 단위	표시 장소	표시 방법	표시 내용
제품마다	단체표준 마크표시 및 제조자 표시는 몸체전면에 잘 보이는 곳에 하여야 하며 위판의 표시는 회사 실정에 따라 할 수 있다.	1. 금속 또는 플라스틱 바탕에 인쇄하거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바탕에 각인 또는 돌출 2. 인쇄 또는 각인	1. 단체표준 표시도표 단체표준마크 지름 10 mm 이상 2. 표준명 및 표준번호 3. 제조연월일 4.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5. 인증단체명 6. 단체표준의 표시사항
<p>비 고 1. 기준에 따른 표시내용은 외관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p> <p>2. 스테인리스 상판 및 썬크볼의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경우 상판의 경우 뒷턱, 썬크볼의 경우 볼의 내부 측면에 사용상의 해가 되지 않도록하여 표시할 수 있다.</p>			

10. 제품의 인증구분

단체표준번호	표준명	종류 또는 등급
SPS-KHFC 005-6336	스테인리스 상판 및 썬크볼	인서트 썬크볼 언더 썬크볼 레이온 썬크볼 조리대 상판 가스대 상판 코너대 상판